

#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8. 5. 22

제 안 자 : 행정건설위원장

## 1.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

마포구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중 명문화할 필요성이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일부 미흡한 자구등을 수정하고자 함.(안 제9조 제2항 제3호 )

##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의2제1항중 “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과”를 “서울특별시장과”로 하고,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를 “서울특별시”로 한다.

안 제6조의2 제목중 “등에”를 “등에 대한”으로 하고, 동조제1호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, 소년소녀가장, 장애인 등 마포구민”을 “마포구민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, 소년소녀가장, 장애인등”으로 한다.

안 제9조제2항제3호를 삭제 한다

안 제10조제1항중 “협의회 위원중 구 소속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”를 “협의회 위원으로 임명된 구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”로 하고, 동조제2항중 “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.”를 “남은 기간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안 제12조중 “다음 각 호의 1에”를 “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”로 한다.

안 제20조제1항중 “다음 각 호의 경우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”를 “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보화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  
**수 정 안 대 비 표**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<u>&lt;신 설&gt;</u>	<p>제5조의2(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)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추진에 있어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과 협의하여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지역정보화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구의 시행계획 중 시가 조정한 계획에 대하여는 이를 수정할 수 있다.</p> <p>제6조의2(저소득층 등에 전산장비 지원)     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전산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, 소년소녀가장, 장애인 등 마포구민</li> <li>2.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</li> <li>3.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</li> </ol>	<p>제5조의2(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정책 등의 조정) ① -----      ----- 서울특별시장과 ----- 서울특별시      -----.</p> <p>②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6조의2(저소득층 등에 대한 전산장비 지원)      (개정안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마포구민 중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, 소년소녀가장, 장애인 등</li> <li>2. ~ 3.(개정안과 같음)</li> </ol>
<u>&lt;신 설&gt;</u>		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9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 구소속 4급이상 공무원 및 업무관련 공무원</p> <p>2. 지역내 연구기관·기업체·대학·언론기관·금융기관 등 지역정보화 관련기관 및 단체의 정보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</p> <p>3.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의장이 추천 하는 구의원</p> <p>4. 정부 및 유관기관의 정보통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</p> <p>5.(생략)</p> <p>③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정보화를 총괄하는 전산정보과장이 된다.</p> <p>④ 협의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보화 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보화촉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</p> <p>⑤(생략)</p>	<p>제9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, -----각 호의 어느 하나-----</p> <p>1.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·교사·연구원</p> <p>2. 지역내 유관기관·민간기관·학계·언론계·산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정보통신업무 관련 공무원</p> <p>5.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전산정보과장-----</p> <p>④-----효율적인 운영과 정보화관련 자문 및 기술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정보화, 인터넷, 정보시스템, 정보통신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단-----</p> <p>⑤(현행과 같음)</p>	<p>제9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2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3. 삭제</p> <p>4. ~ 5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 행	개정안	수정안
<p><b>제10조(임기)</b> 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보직의 구 재임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</p>	<p><b>제10조(임기)</b> ① 협의회 위원중 구 소속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②----- -----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.</p>	<p><b>제10조(임기)</b> ① 협의회 위원으로 임명된 구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된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
<p><b>제12조(위원의 해촉)</b>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	<p><b>제12조(위원의 해촉)</b> (현행과 같음)</p>	<p><b>제12조(위원의 해촉)</b> -----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----- ----- -----.</p>
<p><b>제20조(전산정보자료 등의 제공)</b> ① 구청장은 보유하고 있는 전산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20조(정보화자료 등의 제공)</b> ①----- -----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</p>	<p><b>제20조(정보화자료 등의 제공)</b> ①----- -----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.</p>